

Global Goings-on

노르웨이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지속가능한 연금 및 복지제도 강구

‘OECD 노르웨이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몇 십년간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노르웨이는 고령화 사회로 접근하는 인구학적인 요인 이외에도, 1967년부터 시작된 소득비례연금 프로그램의 포화의 결과로 사회적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OECD 보고서는 노르웨이의 연금 및 복지제도가 재정적으로 건강한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론은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존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의 앞으로의 사회개혁들은 장래의 고령층 대상 예산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성장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OECD 보고서는 최근 제안된바 있는 노르웨이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몇

가지 대책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하고 있다. 그 예로, 개인의 평생소득에 기반한 보험통계적인 공정한 퇴직 제도의 도입으로 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직하는 기대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GDP의 3%로서 현재의 복지지출 비용이 GDP의 9%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OECD 보고서는 또한 연금 등의 제도들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적조기퇴직 제도에 대한 공적부조를 없애야 하고, 장애연금과 장기적인 병가의 자격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OECD Economics Department 홈페이지
[http://www.oecd.org/olis/2006doc.nsf/linkto/ECO-WKP\(2006\)8](http://www.oecd.org/olis/2006doc.nsf/linkto/ECO-WKP(2006)8)

보건의료의 질과 비용간의 균형

OECD에서 간행된 노르웨이의 보건정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 시장의 기능을 이용한 과감한 개혁들이 노르웨이의 보건 의료 서비스 수용능력을 강화시켰고,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OECD 보고서는 노르웨이가 개혁 단행 이후 보건 의료 지출이 가속화되어서, 1인당 보건 의료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지출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인하는데, 병원 소유권의 집중화에 의한 환자들의 지출 추곡 등 정치적 영향력의 강화, 환자가 부담하기에 크지 않은 액수의 지출 공동 부담액, 노르웨이의 석유 수출에 의한 부의 축적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르웨이에도 보건 의료 지출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정치가들의 압력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노르웨이에서의 앞으로의 보건 의료 서비스 분야의 개혁은 보건 의료 비용 지출에 대한 가치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보고 있다.

출처: OECD Economics Department 홈페이지
[http://www.oilis.oecd.org/oilis/2006doc.nsf/lin kto/ECO-WKP\(2006\)9](http://www.oilis.oecd.org/oilis/2006doc.nsf/lin kto/ECO-WKP(2006)9)

독 일

부모수당제도

독일 내각은 '부모수당' (Parenting benefit) 제도를 2007년 1월 1일자로 도입할 것을 승인하였다. 부모수당은 부모 중 한 명에게 12달간 지불되고 다른 한 명에게 2달간 지불되며, 한부모 가족의 부/모는 총 14개월간 부모수당을 받게 된다.

본 수당의 목적은 젊은 부모들이 경제적인 압박 없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부모수당의 월 수령액은 수령자의 최근 실질 급여의 67%이며, 최대 월 1800유로 (1유로 = 약 12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영아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 무직이거나 급여가 300유로 이하였을 경우라도 한 달에 최소 300유로씩 받을 수 있다.

보육수당과는 달리 부모수당에는 수령을 위한 급여수준제한이 없다. 부모수당의 최소 수령액 300유로는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과 병립가능하나 부모수당 수령액이 최소액을 초과할 경우 다른 혜택의 수령액은 감소될 수 있다.

부모수당의 수령시기 및 수령자는 해당부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부모가 동시에 혜택을 받을 경우 총 수령기간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수령자가 14개월 이상 수령하고자 하는 경

우, 월 수령액은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한 자녀를 출산하고 24개월 이내에 재출산할 경우, 부모수당 외에 '형제보너스' (Sibling bonus) 가 지급되며, 추가되는 자녀에 대해서도 각각 최소 300유로씩 부모수당이 지급된다.

본 제도의 승인으로 독일 연방정부는 2008년까지 매년 40억 유로 이상을 부모수당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독일 인터넷 정보포탈 2006년 6월 14일자 보도

<http://www.bundesregierung.de/en>

변화되는 실업수당

독일하원은 장기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실업자가 일자리제안을 거절하였을 경우, 실업자에게 지불되는 실업수당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행 실업수당법의 수정안으로 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2개월의 기간 동안 일자리 제안을 3번 이상 거절할 경우, 실업수당 수령액 감소처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출산이나 가족수발 등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실업자 본인에게 직접 증명할 의무가 있게 된다.

2006년 5월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독일에는 총 525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실업수당의 혜택

을 보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92만 명 정도가 노동 가능인력으로 추정된다.

출처: 독일 인터넷 정보포탈 2006년 6월 1일자 보도

<http://www.bundesregierung.de/en>

스웨 덴

복지제도의 양극화 문제

스웨덴 보건복지위원회의 '사회보고서 2006'에 따르면 90년대의 경기침체기에서의 회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개선된 생활환경을 가져다 주었지만, 스웨덴 국민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경기침체기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임금으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고, 적은 수의 사람들이 빈곤한 삶을 살게 되었으며, 사회수당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90년대의 경제 위기 이전과 비교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사회보험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사람의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반적인 복지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스웨덴 전체 인구의 6~7%의 사람들이 사회복지 발전의 혜택을 전혀 경험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나서 복지의 양극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보고서 2006’은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빈곤의 깊은 연관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으며, 노동시장에 진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혜택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을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데 충분한 것임을 드러내 주었다.

출처: 스웨덴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ocialstyrelsen.se/Publicerat/2006/9101/Summary.htm>

영국

연금개혁

2006년 5월 25일, 향후 40년 연금 시스템의 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한 연금 개혁 백서가 발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사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무적인 ‘연금저축제도’가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근로자들이 개인창구에 저축하는 형태로 연금을 납부할 경우 고용주들은 사용자 부담 보험료(matching contribution)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퇴직 시 연금 재정에의 낮은

부담분으로 인하여 연금수령액이 납부액보다 25% 이상 상승된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방침들은 소득비례연금에 의해 지원받을 것이다. 이로써 2050년에 이르러서는 근로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나 근로와 부양의 의무를 함께 저운 사람들이 매주 135파운드(약 24만원) 이상을 국가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장임금수준보다 20파운드 정도 상회하는 액수이다.

개혁의 유연한 도입을 위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용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주들의 기여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기여율은 최초 입법안에 기술된 비율이 적용될 것이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편 본 개혁안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연금수령연령을 기대수명에 맞추어 조금씩 상승시킬 것이다. 연금수령연령은 2024년과 2026년의 2년에 걸쳐 66세로 상승될 것이고, 2034년에서 2036년에 이르러서는 66~67세, 2044년에서 2046년에는 68세로 조정될 것이다.

아울러 본 개혁안은 극빈 연금수령자들을 빈곤에서 구제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극빈 곤층은 사회의 총소득의 성장이 늘어날 때, 이에 비례하는 증가분을 지급받을 것이다.

여성에게 특히 영향을 주는 시스템내의 불평등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기여 체계를 현대화함으로써 개선될 것이다. 그 내용은 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부여하는 연금 납부년수(qualifying years)를 30년으로 정하고 급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로써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이나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연금 혜택도 개선될 것이다. 현재는 연금 수령 연령 여성의 30%만이 완전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2010년에는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게 되는 여성의 70%가 완전기초연금 수령자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 개혁안이 개인의 책임성을 높임과 동시에 연금 재정을 확보하고, 체계를 간결하고도 지속가능하며 공정하게 만드는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영국 근로연금부 홈페이지
<http://www.dwp.gov.uk/mediacentre/pressreleases/2006/may/pn25.asp>

보건부, 전자 환자 기록 서비스 가속화 계획

영국 보건부 장관 Wamer경은 전자 환자 기록 서비스 시행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BMA(British Medical Association: 영국 의사회)의 지역 의료 협의회 컨퍼런스에서 Wamer경은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의료보험) 전자 환자 기록 서비스의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2007년 초 환자 정보를 케어 레코드(summary care record)상에 전송하는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한 환자의 담당 일반의의 변동이 생길 때 그 환자에 대한 기록의 유지 및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둘째는 특별 전문 위원회를 세워 세부 시행 계획을 개발하고, 나아가 전자 의료 기록 서비스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특별 전문 위원회에서 비전문가가 의장직을 맡을 것이며, 다양한 의료계의 대표들로 구성될 것이다.

올해 말까지 세부 활동 계획을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에서, 특별 전문 위원회는 이미 전자 환자 기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재향 군인 관리국(US Veterans' Administration)의 관리 사례를 참고할 것이다. 보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즉각 전문가들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료 부수석(Deputy Chief Medical Officer)인 Martin Marshall교수는 이 특별 전문위원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 의료인 협회(National Clinical Leads)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 Martin Marshall의 합류는 의료계에 전자 환자 기록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Wamer 장관은 또한 전자 환자 기록에 의해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영국 보건부 홈페이지
http://www.dh.gov.uk/PublicationsAndStatistics/PressReleases/PressReleasesNotices/fs/en?CONTENT_ID=4136065&chk=15BaQ8

청소년 자살방지 대책 보고서

영국 보건부는 청소년의 자살율을 감소시킬 방안들에 주목, Camden, Bedfordshire, Manchester 등 3개의 지역 사례연구로부터 발견한 점들을 기술한 리포트를 발간하였다.

영국의 청소년 사망 중 자살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비록 지난 5년간 영국의 청소년 자살율은 감소세에 있으나, 작년만 해도 무려 1000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자살율을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취약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막는 장벽들을 규명하고, 특정 취약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월 14일 발간된 이 보고서는 전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Camden, Bedfordshire, Manchester에서 이루어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에서 도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단위의 청소년 센터나 청소년 대상 서비스가 있는 경우, 통상의 일반의가 관찰하는 곳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둘째, 일선의 활동가들의 경우 적절한 훈련을 받았을 때 더욱 좋은 성과를 보였다.

셋째, ‘정신건강’ 대신, ‘스트레스 관리’ 또는 ‘웰빙’ 등의 말이 사용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프로젝트 참여를 권장하며, 정신건강 이슈가 낙인처럼 여겨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논의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넷째, 청소년들의 인식 속에 활동가들이 경찰과 같은 타기관과 자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청소년들에게 더욱 친근히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행연구와 지역에 기반을 둔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더욱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이들 청소년들에게 보다 즉각적이고 신뢰할 만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정보 및 조언이 잘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영국 보건부 홈페이지
http://www.dh.gov.uk/PublicationsAndStatistics/PressReleases/PressReleasesNotices/fs/en?CONTENT_ID=4135031&chk=pNh9et

캐나다

새로운 종합아동보호계획

캐나다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장관 Diane Finley는 5월 3일, 캐나다의 신종합아동보호계획의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두 가지 주요한 골자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월 100 캐나다 달러(약 8만 5천원)의 아동 양육 보

조수당을 제공하는 것, 둘째는 2007년부터 아동보육시설 확충사업(Child Care Spaces Initiative)에 따라 매년 25,000개의 아동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2006년 캐나다는 신종합아동보호계획에 의한 보조수당 지급을 위하여 2년간 37억(캐나다)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부모들은 7월부터 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수당은 기존의 아동 세금 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 국가 아동 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아동 양육 비용 삭감(Child Care Expense Deduction)과 함께 제공될 것이다.

아동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위해서 정부는 2억 5천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주·준주 정부, 고용주들,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또한 아동 보육 정보 웹사이트(www.universalchildcare.ca)를 발족시켜 캐나다의 종합아동보호계획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을 발표하였다.

출처: 캐나다 종합아동계획 홈페이지
<http://www.universalchildcare.ca/en/home.shtml>

노동부, 2005 고용 평등 연차 보고서 출간

캐나다 노동부 장관이자 퀘벡주 경제개발부 수반인 Jean-Pierre Blackburn은 6월 15일, 캐

나다 정부의 고용 평등 법안 시행 20주년 기념 연차 보고서의 발간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4개 특정 집단 - 여성, 소수민족(visible minorities), 원주민, 장애인 - 의 꾸준한 고용 개선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4개 특정 집단의 38.3% 이상이 고용 평등 법안에 의하여 직장에 고용되어 있으며, 각각의 고용 비율은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 여성: 40.9 → 43.4 %
- 소수민족: 5.0 → 13.3%
- 원주민: 0.7 → 1.7%
- 장애인: 1.6 → 2.5%

장관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체계에서 차별 없는 직장과 모든 근로자의 참여가 고용주에게 더욱 경쟁력을 더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킨다”고 밝힘에 아울러 “다양성은 캐나다의 특징이며 이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캐나다의 강점”이라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정부의 고용방침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직장에 고용되어 있으며, 4개 특정 집단의 경우 이들 직장 노동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2005 연차 보고서와 고용 평등 법안 및 직장내 인종차별금지전략에 관한 정보는 인적자원사회개발부 홈페이지(www.hrsdc.gc.ca)의 “Labour and Workplace”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처: 캐나다 사회보장부 홈페이지
<http://news.gc.ca/cfmx/view/en/index.jsp?articleid=220479&>

프랑스

고령노동자 고용계획

프랑스 총리는 2006년 6월 6일 프랑스 경제 사회위원회에서 고령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한 ‘고령노동자 고용계획’(Plan pour l’emploi des Seniors)을 발표했다.

55세에서 64세까지의 노동인력의 취업률을 2010년까지 연간 2포인트씩 상승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계획은, 고용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퇴직연령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고령 인구의 고용에서 퇴직으로의 전환을 도우려는 취지이다.

본 계획은 일하고자 하는 고령노동인력이 일 정기간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 기한 부고용계약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기한부고용 계약제도의 대상은 57세 이상의 무직자이며, 이들은 최장 18개월간, 최대 2회의 단기고용계약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프랑스 정부는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65세 이전 강제퇴직 규정을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2006년 9월부터, 총 5백만 프랑을 투자하여 고령 노동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프랑스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remier-ministre.gouv.fr/>)

[premier-ministre.gouv.fr/](http://www.premier-ministre.gouv.fr/))

프랑스고령인구담당부서 홈페이지

(<http://www.personnes-agees.gouv.fr/>)

연금개혁의 점진적 진행

프랑스의 연금개혁이 운영단계에 돌입하였다고 2006년 4월 프랑스 국무총리실이 보도하였다.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고, 국민의 평균수명이 증가됨에 따라 연금적자로 타격을 입게 된 프랑스는, 2003년 8월21일 통과된 법에 의해 연금개혁을 승인하였었다.

본 연금개혁은 노동자들의 연금납부기한을 늘림으로써 정부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 정책분석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러한 연금개혁에 따라 총 GDP의 0.01%에서 0.015%의 구조적 재정절감 효과를 갖게 되며, 2020년까지는 연금 시스템의 균형을 가져오리라 추정하고 있다.

2008년까지의 시작단계에서, 새로운 연금체계는 공무원연금의 납부기간을 일반연금의 수준에 맞추어 40년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2009년부터 2020년까지는 모든 연금체계의 연금납부기간이 42년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금납부 기간의 증가로, 프랑스는 연금수령자의 구매력 보장, 최소임금생활자의 연금수령액 증가 및 조기노동인력의 60세 이전 퇴직이

가능해 졌다.

또한, 다양한 연금체계에 연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의 연금지불액은 그들의 연금지불액이 최고였던 당시 지불액을 바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개혁으로, 2006년 4월까지 총 15만 4천명이 추가된 혜택을 보고 있으며, 개인 연금수령액은 최대 총 18%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새로운 연금체계는 연금에 차별성을 두어, 개별적으로 연금수령액의 증감을 가능하게 하였다. 현재까지 총 1.3%의 새로운 퇴직자들은 정해진 연금납부기간이상 추가로 근무하였으며, 추가근무기간 동안 납부된 연금에 대해서는 연간 3%의 보너스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반대로 연금지불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은 미납기간 납부액에 연간 10%의 연금감소율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다. 2004년의 통계에 따르면 약 5%의 새로운 퇴직자들의 연금이 이러한 이유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출처: 프랑스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www.premier-ministre.gouv.fr/>

핀란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혁신

핀란드 사회보장부 장관 Leila Kostianen은 2006년 5월 28일 개최된 제18회 북유럽 노년학 학술대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유럽 대륙에 고령화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가져다준 결과를 낳게 하였다고 밝혔다.

Kostianen 장관은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연금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연금지출은 크게 증가하게 되며, 또한 의료부담 지출도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재정 악화는 세금을 늘려야 하는 압박을 가져오게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장관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서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퇴직연령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평균 수명의 연장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을 의미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로 노동인구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Kostianen 장관은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이민정책, 가족정책, 그리고 일과 가족의 조화 방안 모색 등에 대해서 열린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Kostianen 장관은 사회정책들의 효율성과 사회, 의료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질병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미래에는 이에 관련된 의료비용이 줄어들 것인데, 이는 비단 보건정책만의 과제가 아니며, 환경정책, 주거와 근무 환경, 도시 정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장관은 '모든 사회정책에서의 보건증진'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Kostianen 장관은 사회, 의료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북유럽 국가들의 공통된 화두인데, 덴마크에서 대대적인 시정 개혁의 감행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려 했던 것처럼, 핀란드에서도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하고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시정개혁과 서비스구조 변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핀란드 사회보건부 홈페이지

<http://www.stm.fi/Resource.phx/publishing/documents/7185/index.htm>

호주

육아정보 웹사이트 개설

호주에서는 새로운 육아정보 웹사이트 (<http://www.raisingchildren.net.au>)가 개설되어 영유아 양육에 관한 양질의 최신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웹사이트는 호주 가정의 주간(national Families Week)을 맞아 2006년 5월에 오픈하였다.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며, 수준 높은 최신 양육 정보에의 필요성은 영·유아 양육 계획(National Agenda for Early Childhood)과 양육 정보 사업(Parenting Information Project) 협의 중에 제시된 바 있다.

본 웹사이트는 영·유아 개발 및 양육법, 행동, 영양, 건강, 학습, 의사소통 및 안전에 대한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서비스 및 활동에 사람들을 연계시키고, 기존에 웹상에 게재된 방대한 육아 정보에의 연결고리를 제공하여 정보의 중심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영·유아 대상사업인 Early Childhood - Invest to Grow initiative의 일환으로, 호주 정부는 이 웹사이트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위해 4년에 걸쳐 400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RCN(Raising Children Network)은 가족 및 인구 등의 분야의 유관 기관들의 집합체로써, 2005년 2월 사이트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RCN은 부모 및 실무자들로 하여금 Raising Children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개선할 부분을 제안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사이트의 자료들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보건 전문가들 및 일반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의 개발과 유지·보수는 영·유아 및 보육 분야 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외부인들로 이루어진 자문 그룹은 사이트의

내용을 평가하여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내용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출처: 호주 Dep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홈페이지
http://www.facs.gov.au/internet/facsinternet.nsf/aboutfacs/programs/sfsc-ec_parenting_info_website.htm 